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753
----------	-------

발의연월일 : 2025. 10. 28 .

발 의 자 : 박수영 · 박충권 · 조은희
이인선 · 김재섭 · 이종욱
강선영 · 안상훈 · 유상범
서범수 · 윤영석 · 김기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현행법의 전부개정으로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보안업무에 대한 사항이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 업무로 축소되면서 하위 법령인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의 대상이 축소되었음.

그런데 최근 공무원의 공무상 기밀노출과 관련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신원조사를 통한 보안업무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신원조사는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공권력의 행사라는 점에서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과 그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원조사 대상을 보안업무 축소 이전으로 복원하여 국가 기밀이 노출될 우려를 줄이고, 신원조사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신원조사) ① 원장은 국가보안을 위하여 충성심·신뢰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신원조사를 한다.

② 관계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임용 예정자
2.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3. 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원조사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신원조사”를 “「국가정보원법」 제4조의2에 따른 신원조사”로 한다.

제8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②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3항 중 “신원조사”를 “「국가정보원법」 제4조의2에 따른 신원조사”로 한다.

③ 군무원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전단 중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4항의 위임에 따른 보안 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한 신원조사”를 “「국가정보원법」 제4조의2에 따른 신원조사”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4항의 위임에 따른 보안 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한 신원조사”를 “「국가정보원법」 제4조의2에 따른 신원조사”로 한다.

④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가정보원법」 제4조의2에 따른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조의2(신원조사) ① 원장은 국가보안을 위하여 충성심 · 신뢰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신원조사를 한다.</u> <u>② 관계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u> <u>1. 공무원 임용 예정자</u> <u>2.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기밀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u> <u>3. 국가보안시설 · 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u> <u>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u> <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원조사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u>

	<u>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